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올림픽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018년 3월 31일 까지 연장하여 동계올림픽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개정 사항

-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 연장
· 2016년 12월 31일 ⇒ 2018년 3월 31일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.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)
- 2) 규제심사, 부패연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: 저촉사항 없음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20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2018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 성 문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